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상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과 자구를 반영하고
- 나. 같은법 시행규칙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개정되어 조례의 기준이 일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으로 변경 (안 제1조)
- 나.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질소산화물(NO₂로서) 배출허용기준 중 2)발전시

설의 나)고체연료사용시설 및 다)기체연료사용시설과 3)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동 기준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0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질소산화물(NO_2 로서) 배출허용기준 중 2)발전시설의 나)고체연료사용시설 및 다)기체연료사용시설과 3)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동 기준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이상)	
	(1)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70(6)ppm이하
	(2) 신규시설	50(6)ppm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량 100MW이상으로서 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100(13)ppm이하
	(나) 신규시설	50(13)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신규시설	50(12)ppm이하

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라 함은 2002년 4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과 2002년 4월 29일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대기환경보전법제8조제3항</u> 및 <u>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u> ----- ----- ----- ----- -----.
제2조 (배출허용기준) <u>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8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NO2)중 나목 발전시설의 (2)고체연료사용시설 및 (3)기체연료사용시설과 다목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동 기준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u>	제2조 (배출허용기준) <u>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가. 가스형태의 물질의 질소산화물(NO2)중 2)발전시설의 나)고체연료사용시설 및 다)기체연료사용시설와 3)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동 기준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u>

현행

[별표]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이상)	
	(1)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70(6)ppm이하
	(2) 신규시설	조례시행일 부터 50(6)ppm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내연기관 (설비용량100MW이상)	
	(가)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100(13)ppm이하
	(나) 신규시설	조례시행일 부터 50(13)ppm이하
	(2) 기타발전시설 (설비용량100MW이상) (가) 기존시설	
	가)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 #1,2호기	2003년 1월 1일부터 80(4)ppm이하
	나)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 # 3,4호기	2005년 1월 1일부터 50(4)ppm이하
	(나) 신규시설	조례시행일 부터 50(4)ppm이하
	2.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2005년 1월 1일 부터 7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조례시행일 부터 50(12)ppm이하

- 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라 함은 조례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과 조례시행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

[별표]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이상)	
	(1)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70(6)ppm이하
	(2) 신규시설	50(6)ppm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량 100MW이상 으로서 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기존시설	2003년 1월 1일부터 100(13)ppm이하
	(나) 신규시설	50(13)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신규시설	50(12)ppm이하

- 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라 함은 2002년 4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과 2002년 4월 29일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시설(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5조(배출허용기준) ☐ 인천광역시 환경기본조례 ○ 제14조(배출허용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인천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